

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청년 추가 모집 공고

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,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경험 및 생태계 진입을 목적으로 제주 도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「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」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. 6. 30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

I 개요

□ 공모 개요

- (공고명)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청년 추가 모집
- (모집 대상) 청년(만 19~39세) 중 미취업자
- (모집 기간) 2026년 6월 30일(화)부터 상시모집
 - ※ 일경험 참여청년 총 40명 충족시 모집 마감 (기존 선발 청년 28명)
- (참여 기업) 제주 도내 사회연대경제조직(마을기업, 협동조합,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)
- (직무 내용) ①홍보·마케팅·영상·디자인, ②AI기반 데이터 분석·관리, ③상담·교육·복지서비스, ④문화·예술·공연·전시 기획·지원, ⑤에너지·안전·기술진단, ⑥사무행정·회계·경영지원 등
- (근무 기간) 근로시작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
- (근무 조건) 주 5일(주 40시간), 1일 8시간(9시~18시) 기준, 월 최대 2,530,990원
 - ※ 인건비는 2026년 제주도 생활임금을 적용(시급 12,110원 기준)
 - ※ 월 급여는 참여기업에서 지급하며, 4대보험료는 참여기업에서 납부함
 - ※ 기업과 청년이 합의하여 위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급여는 기업 부담

II 주요 내용

□ 모집 내용

- (모집 대상) 「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」상 청년(19~39세) 중 미취업자
- (지역요건) 사업 참여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유지 필요
- (참여제한) 참여 신청일 기준 실업상태여야 하며, 아래 사항 해당시 참여불가

- ◆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휴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증명으로 전년도 사업소득 1,200만원 이하를 증빙하면 참여 가능 ※프로그램 개시일까지 해소되어야 함
- ◆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
※ 단, 동일 기간 내 참여수당 등 금전적 지원이 중복으로 지급될 때에 한함
- ◆ 참여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
- ◆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(대표자)인 자
- ◆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(국·지방정부)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자
- ◆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
- ◆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
※ 참여제한 사유는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사업 참여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

- (참여 기업) 제주 도내 사회연대경제조직(마을기업, 협동조합,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)

- 참여기업 소개와 직무내용 등 자세한 정보는 노선 웹사이트 접속하여 확인

※ 추후 공유 예정

- (모집 인원) 12명 내외

※ 일경험 참여청년 총 40명 충족시 모집 마감 (기존 선발 청년 28명)

- (직무내용) ①홍보·마케팅·영상·디자인, ②AI기반 데이터 분석·관리, ③상담·교육·복지서비스, ④문화·예술·공연·전시 기획·지원, ⑤에너지·안전·기술진단, ⑥사무행정·회계·경영지원 등

- (근무 기간) 근로시작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

- (근무 조건) 주 5일(주 40시간), 1일 8시간(09:00~18:00) 기준

- 급여: 월 최대 2,530,990원(세전)

※ 인건비는 2026년 제주도 생활임금을 적용(시급 12,110원 기준)

※ 월 급여는 참여기업이 청년에게 지급하며, 4대보험료는 참여기업이 직접 납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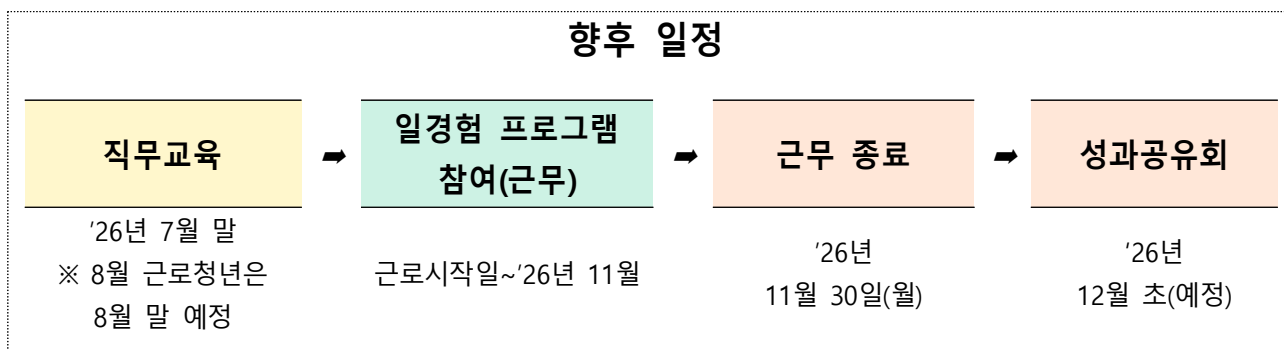
※ 참여기업이 청년인턴에게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시 추가되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는 기업이 부담함

□ 신청 방법

- (신청 기간) 2026년 6월 30일(화)부터 상시모집
- (신청 방법) 이메일 접수 geonye94@jejuh.org
 -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<https://jejuh.org> → 홈페이지 상단 ‘소식공유’ 접속 → ‘청년 일경험 참여청년 추가 모집’ 확인하여 신청
 - 선호하는 기업을 최대 3개까지 정하여 신청
 - ※ 최종적으로 참여청년은 1개 기업에서 근무 가능
 - 참여기업 소개와 직무내용 등 자세한 정보는 노션 웹사이트 접속하여 확인
 - ※ 추후 공유 예정
- (참여 유형) 취업형, 일자리창조형, 청년매니저 ※최종 참여는 1개 유형만 가능
 - 취업형 인턴: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하며 직무 역량을 높이는 실무 중심형
 - 일자리창조형 인턴: 새로운 직무 아이템을 보유한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창업지원조직에서 일하는 것으로 팀 단위(2~4명)로 기업과 매칭함
- (제출서류) ①참여청년 신청서, ②자기소개서 ③주민등록등본표 ④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⑤참여청년 서약서 ⑥(해당시)경력증명서,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증, 직무 아이템 제안서
 - 제출서류 미비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며, 미제출 시 선발 제외
- (선발 방법) 운영기관(센터)이 신청한 청년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기업이 면접(온오프라인) 여부 결정하여 진행한 후 최종 선발
- (문의)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070-4236-3385~3386

□ 선발 이후 일정

- (직무교육) 추가 선발자에 관한 직무교육은 근로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완수 예정이며, 이를 위하여 참여기업에게 직무교육 관련 협조 요청 예정
 - ※ 행정안전부 시행지침 근거



- (근무시작) 면접에서 기업이 청년 선발 후 근무일 조율한 후 근로 시작

□ 근무 조건

- (근로 시간) 주 5일, 주 40시간, 1일 8시간(9:00~18:00), 휴게시간 12:00~13:00
- (근로 기간) 근로시작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
- (월 급여) 시급 12,110원(제주도 생활임금 적용), 월 급여 최대 2,530,990원(세전)
 - ※ 월 급여는 참여기업에서 지급하며, 4대보험료는 참여기업에서 납부함
- (급여지급) 매월 참여기업별 지정일에 참여청년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
- (연장 근무) 참여기업과 참여청년의 합의가 있을시 주 12시간 이내로 함
 -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,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업의 긴급한 필요가 있고 참여청년과 합의한 경우 실시 가능
 - 휴일·연장·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참여청년과 합의를 통해 주말운영 및 시간조정(08:00~19:00 범위) 가능
 - 기업과 청년 합의로 위 운영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급여는 기업 부담

III 기타 내용

□ 청년 지원 프로그램

- (프로그램 지원)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과 참여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
 -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: 참여청년의 원활한 일경험을 위하여 운영기관(센터)이 참여청년에게 고충상담, 상시 상담창구 운영, 사업 안내 등을 지원함
 - 멘토링 프로그램: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, 참여청년과 같은 부서에 있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참여기업의 직원을 멘토로 정하여 멘토링을 지원함

□ 법적 지위와 4대보험 가입의무

- (법적 지위) 참여청년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‘근로자’에 해당
- (4대보험)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 대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함

□ 연장근로와 근로조건 변경

- (연장근로) 연장근로시간은 참여청년의 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 이내로 함
 - 연장·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,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합의가 이뤄진 때에만 참여기업의 긴급한 필요가 있고 참여청년과 합의하면 실시 가능
 - 휴일·연장·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참여청년과 합의를 통해 주말 운영 및 시간조정(08:00~19:00 범위) 가능
 - 기업과 청년의 합의로 위 운영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는 기업이 부담함
- (근로계약 변경) 참여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「근로기준법」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,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*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여청년에게 교부
 - ※ 임금(구성항목, 계산방법, 지급방법)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유급휴가
- (근로조건 변경 불가)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기준이며, 참여청년과 합의 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참여청년에게 불리하게 변경 불가
- (청년이 근로를 종료하고 싶을 경우) 참여청년이 근로를 종료하고 싶으면 퇴사일로부터 10일 전에 참여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함
 - ※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 사직서 제출 없이 그 만료일로 퇴직

□ 근태관리

- (출근인정) 천재지변, 유행성질병·감염병 등 특수상황 발생 시 운영기관(센터)이 문서로 인정하면 출근한 것으로 인정 가능
 - 단,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가 사용이라도 전체 일경험 기간의 아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
 - ※ 8주 이내: 10%, 8주 초과~12주: 15%, 12주 초과: 20%
- (결근)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결근 예정일 전날까지 참여기업에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
 - 사후승인: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결근 당일 업무종료 전까지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리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
 - 무단결근: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
- (지각·조퇴·외출) 지각·조퇴·외출하고자 하는 경우 당일 출근시간까지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,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바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함

※ 지각·조퇴·외출 누계 시간이 8시간일 경우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

□ 휴일과 휴가

○ (휴일)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름

① (주휴일)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 보장

② (공휴일) 공휴일(일요일 제외)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 적용

※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며, 휴무일 또는 비번일과 겹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급 적용

③ (휴일대체)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다른 근로일로 대체 가능

- 이 경우 참여기업과 참여청년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며, 휴일대체 사실은 최소 24시간 전에 알려야 함

○ (연차유급휴가)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

※ 단,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발생

- 연차유급휴가는 반일 또는 1시간 단위(지각·조퇴·외출)로 사용 가능

※ 8시간=1일로 계산, 일경험 기간 내 연차 미사용 시 근무종료 후 연차수당 지급

○ (경조사 휴가) 경조사 휴가의 내용과 휴가일수는 아래 표를 확인

구 분	휴가일수	대상
결 혼	5일	본인
	1일	자녀, 형제·자매 결혼
사 망	5일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	3일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
	3일	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
	1일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
출 산	10일	본인 및 배우자

○ (병가)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유급 병가, 업무 외 부상·질병인 경우 15일의 무급 병가 부여

-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, 7일 이상 연속 사용 또는 연간 누계 6일 초과 시 「의료법」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제출
 ※ 종일·반일·1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, 8시간을 1일로 산정

○ (특별휴가) 취업시험, 면접, 자격증 시험 응시 시 특별휴가(유급) 부여

- 수험표 등 응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때에만 시험 당일 부여하며, 1개월마다 1일 이내 사용 가능

※ 자격증 시험은 합격·불합격으로 결과가 통보되는 시험만 적용(어학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미적용)

- (재해에 따른 휴가) 풍수해,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참여청년 본인이 손해를 입으면 최대 5일의 유급휴가 부여

□ 공가

- (공가) 법령상 의무 이행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요한 기간 동안 부여(유급)

공가 사유

1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판정검사, 소집, 동원 또는 훈련에 응하는 경우
2. 공무와 관련하여 법원, 검찰, 경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
3.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
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건강진단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검진, 「결핵예방법」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는 경우
5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
6. 천재지변, 교통 차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

□ 신청 및 심사관련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심사 및 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 권한이며,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

IV 서식

- 서식 1. 참여청년 신청서
- 서식 2. 참여청년 자기소개서
- 서식 3. 참여청년 서약서
- 서식 4. 참여청년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서식 5. 참여청년 직무 아이템 제안서 **※해당시 작성**

서식 1

참여청년 신청서

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청년 신청서

성 명			주민등록번호	-
주 소				
핸드폰번호			이메일주소	
참여희망기업	(1지망)	(2지망)	(3지망)	
취업여부	[] 취업 [] 미취업		과거 취업경험	[] 있음 [] 없음
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이력	참여 프로그램	참여기간	참여기업명	
		20 . . ~ 20 . .		
		20 . . ~ 20 . .		
		20 . . ~ 20 . .		
주요경력	직장명	담당업무	재직기간	
			~	
			~	
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	자격증/교육명		취득/수료시점	
본인은 위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하며,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합니다.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: (인)				
첨부서류	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동의서 1부 2. 참여청년 서약서 1부 3. (해당하는 경우) 참여청년 직무 아이템 제안서 1부			

서식 2

참여청년 자기소개서

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청년 자기소개서

성명		참여희망기업 ※희망기업이 여러 곳일 경우 각각 작성	
가치관 및 지원동기	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'사회연대경제'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본 사업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해 주세요. ※300자 이내로 기술해주세요.		
직무 역량	지원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역량을 키워왔는지 관련 경험(학업, 활동 등)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. ※300자 이내로 기술해주세요.		
포부 및 성장	이번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종료 후 본인의 커리어 발전 계획을 기술해 주세요. ※300자 이내로 기술해주세요.		

서식 3 참여청년 서약서

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청년 서약서

성 명	(서명)	생년월일	
-----	------	------	--

1. 본인은 정부지원금 중복 참여·지원* 및 취업 사실(고용보험 가입)이 없음을 서약하며, 일경험 중 취업을 한 경우 참여기업에 즉시 고지할 것을 서약한다.
 - *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외 취업지원 사업에 기간을 중복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
 - ※ 향후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발견 시 정부지원금 일부 또는 일체를 환수할 수 있음
2. 본인은 사업 참여기간 중 부정확한 방법에 의한 출석(허위출결, 대리출석, 무단결근 등)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경험을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.
 - ※ 반복적인 무단결석, 프로그램 진행 방해, 다른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·성희롱 등 정상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중도탈락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
3. 본인은 본인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(대표자)가 아님을 서약한다.
4. 본인은 사업주관 관리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 과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전화 또는 대면의 방식으로 확인 요청 시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한다.
5. 본인은 사업의 취지, 의무 및 혜택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었으며,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.

2026년 월 일

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귀하

서식 5

참여청년 직무 아이템 제안서

구 분	내 용
배경 및 필요성	기획 배경 및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·지역 문제 작성
직 무 명	
주 요 직 무	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
주 요 고 객	서비스 대상
직 무 차 별 성	기존 직무(직업)와 무엇이 다른지 추진배경과 연계하여 기술
사 회 연 대 경 제 분야와의 연계성	
기 대 효 과	

※ 직무개발 아이템은 단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실제 수행 가능한 활동으로 작성하여야 함

※ 직무 아이템 제안서는 일자리 참여유형이 '일자리창조형 인턴'인 경우 참여청년이 희망기업에 제안하는 서식임